

창녕군의회 공고 제 2026-9호

2025회계연도 창녕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창녕군
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한다.

2026년 6월 1일

창녕군의회 의

